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03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이수진 · 민병덕 · 황정아

김준혁 • 이연희 • 김현정

김문수 · 송옥주 · 이원택

전종덕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활동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한꺼번에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되다보니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고, 정부는 노임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음. 그 와중에 활동지원기관은 사무실 규모 확대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 지출로 활동지원인력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할 경우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

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 신설).
- 나.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 야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 관이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4조의2).

- 라. 활동지원기관은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
 - 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22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제32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의 적정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제22조제7항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활동지원인력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의2제1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제 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지급"을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을 청구하고"를 "한다) 중 활동지원인력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

운영비를 구분하여 청구하고"로, "이를"을 "이를 구분하여"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 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② (생 략)	무)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
	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
	력하여야 한다.
<u> <신 설></u>	제3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
	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
	표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
	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
	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u>사항</u>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u>사항</u>
	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 ⑥ (생 략) <신 설>

(7) (생략) <신 설>

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렁 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 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 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⑥ (현행과 같음)
- ⑦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 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제32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 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 수하여야 한다.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제23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 1.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4.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 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7항에 따른 활동지
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
은 활동지원인력 인건비를 다
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
소 등) ①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제24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u>제5호는 제외한다)</u>

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 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u>지급</u>)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 공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u>한다)을 청구하</u> 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u>이를</u>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생략)

<신 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u>지급 등</u>) ①
한다) 중 활
동지원인력 인건비와 활동지원기
관 운영비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u>이를 구분하여</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현
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물가상승
률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인

	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
	고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u>②</u> · <u>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